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대 결의[가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본 법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1. 본 법의 취지, 일본국 헌법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의 정신에 비추어, 제 2 조가 규정한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이외의 것이라면 어떤 차별적 언동이라도 허용된다는 이해는 잘못이라는 기본적 인식 아래에서 적절히 대처할 것.
2.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그 내용이나 빈도의 지역차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와 함께 그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할 것.
3.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국의 출신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행위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실시할 것.
4.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포함하여 기타 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실태 파악에 힘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검토할 것.